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12. 2

**행 정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승 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마포구청장
- 나. 제 출 일 : 2009. 11. 16
- 다. 위원회회부 : 2009. 11. 19
- 라. 위원회 회부근거 :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1)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로 변경 (안 제4조)
 -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변경 (안 제9조)
 - 3)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변경 (안 제14조)
- 나.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인 “건설교통국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치수방재과장”을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 (안 제9조)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상 표현 변경 및 용어 순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개정문안 : 따로붙임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10.08 ~ 10.28) 결과, 의견제출 없음

5. 조례안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달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치수방재과장”에서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대피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1조 내지 제43조 및 제45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①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의 출입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 (강제대피조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26, 2008.2.29>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4.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 5의2.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 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
- 6의2.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영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난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보수사업
2.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보, 용수로·배수로 및 방조제의 정비·보수사업
4. 영 제32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정비·보수사업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6.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 임차
7.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8.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대책사업
9.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10.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경보시설의 구축 및 보강사업
11.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 (제정)1999.1.16 조례 제 0407호
- (개정)2000.12.05 조례 제 0473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 (개정)2002.11. 1 조례 제 522호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 (전문개정)2005. 4.30 조례 제 593호
- (일부개정) 2007.01.02 조례 제 641 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 3.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2.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3.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4.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07.1.2)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방재과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방재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용자에 관한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할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생략)

(16)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각각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17)~(19)(생략)

부 칙(200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42호 생략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5항중 “치수과 기금관련업무 담당주사”를 “치수방재과 기금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44호 생략